

#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

제정 : 2008. 06. 26.

개정 : 2015. 02. 06.

개정 : 2017. 03. 10.

담당 : 교학팀(950-5405)

----- 목 차 -----			
제1조(목적)	제2조(기능)	제3조(구성)	제4조(위원의 임기)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	제6조(회의록)	제7조(세부사항)	제8조(기타사항)

**제1조(목적)** 본 위원회는 학칙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의 학생 복지 증진과 학생들로 하여금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여 학업에 전심 전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학 및 학생 복지·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, 국가장학금 운영위원회를 겸한다.(개정15.02.26)(개정17.03.10)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장학
  - 1.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
  - 2. 장학금 규정에 관한 사항
  - 3.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  - 4.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(신설16.03.10)
  - 5. 기타 장학에 관한사항(개정16.03.10)
- ② 학생복지
  - 1. 복지시설의 설치, 폐지와 운영에 관한 결정
  - 2. 복지 행정에 관한제 소청 처리
  - 3. 삭제(개정17.03.10)
  - 4. 기타 필요한 사항
- ③ 학생지도
  - 1. 학생의 생활지도 및 과외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
  - 2. 학생 상벌에 관한사항
  - 3. 기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

② 교목실장, 교학처장, 기획실장, 교학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따로 위촉한다.(개정16.03.10)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(개정16.03.10)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,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6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1/2이상이 서명 하여야 한다.(개정17.03.10)

**제7조(세부사항)**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**제8조(기타사항)**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「위원회 관리 규정」을 따른다.(신설16.03.10)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 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 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 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